

의안 번호	2497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보 고 서</p>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1.(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11.(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2.(화)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를 규정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항제6호)
-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규정
(안 제6조제1호)
- 다. 선정 대리인 신청과 통지 등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장 제29조~제31조)
- 라.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9장 제32조~제33조)
(현행)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변경)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2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3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마. 불필요한 조문 삭제

- 기존 제31조(시행규칙) 삭제

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 규정(부칙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중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삭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근거법규

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제93조의2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

5. 검토 사항

(1) 개정배경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보호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를 규정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내용검토

가. 정의(제2조)제1항제6호 신설

- ‘선정 대리인’의 규정을 명확히 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안 제6조제1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영 제4호→영 제5호)

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안 제29조~제31조)

- 안 제29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명시

○ 안 제30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31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제8장 신설에 따라 기존 항목 조항 변경

○ (현행) 제8장 제29조, 제30조

(변경) 제9장 제32조, 제33조

마. 기존 제31조(시행규칙) 삭제

바.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신설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각각 삭제

6. 검토 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51조의2제5호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되어 기존 관리하던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관련 조항 삭제와 개정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 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